

현 장 설 명 서

공사명: 교내 주도로 아스콘 포장 보수공사

< 불 임 >

- | | | |
|----------|-------|-----|
| 1. 도 면 | | 1부. |
| 2. 특기시방서 | | 1부. |

2018. 7. 0.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시설관리부

1. 공사범위는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상호 보완되어 학교 측 결정)에 준하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처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표기 안된 모든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및 학교에서 작성된 시방서에 따른다.(상호보완 되어 학교측 결정)
3. 공사비 계약 내역서에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포함된 사항은 공사비 증가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4. 본 공사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법정 제경비(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를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법정 제경비는 공사 완료 후 학교 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정산처리 하여야 하며, 미납 부분은 공사비 정산처리 한다.
5. 법정 제경비 미납부분은 정산 후 공사비 지급분에서 공제지급 또는 공사비 지급전 환수조치 한다.
6. 계약 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7. 공사용 자재는 KS규격품 혹은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모든 자재는 학교 측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8.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자재는 학교 밖으로 반출하며 수급자의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학교 측에 제출한다.
9. 공사 중 분진 및 이물질로 인해 타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한 후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10. 철거작업 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며, 시설물(차도, 보차도, 가로수, 조경목, 경계석 등) 손상 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도록 한다.
11. 공사 현장에는 경험이 풍부한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하며, 작업내용을 학교 측에 보고하도록 한다.
12. 해당범위는 바브켓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 기존 아스콘을 T:50mm이상 걷어내도록 한다.
13. 파쇄작업이 끝난 후 노면 청소를 완료하고, 택코팅(아스팔트유제)을 고루 도포한 후 #78 표층 아스콘을 포장하도록 한다.
14. 파쇄 된 페아스콘은 철거 즉시 차에 실어서 학교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여, 도로에 페아스콘이 적치되어 차량통행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표층아스콘의 포설은 아스팔트 휘니셔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16. 아스팔트 휘니셔 장비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 아스콘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휘니셔의 운영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건설공사표준시방서 기준)
17.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건설공사표준시방서 기준)
18. 기존 아스콘포장 부분과 신규 아스콘 포장이 접하는 부분은 아스팔트 유제를 뿌려 골재의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9. 아스콘포장 완성면은 3m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서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건설공사표준시방서 기준)
20. 19번의 항목에 따라 감독관이 검사하여 가장 오목한 곳이 3mm이상일 경우 학교 측의 결정에 따라 철거 후 재시공하도록 한다.(건설공사표준시방서 기준)
21. 포장 공사 중 일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22. 포장 공사로 인한 차량 통제 시 학교 측과 협의하여 가설 횡스를 설치하여 차량을 유도하여야 한다.
23. 수급자는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검사 시 사진대장을 제작하여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공사 중 기존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며, 손상이 있을 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도록 한다.
25. 공사 중 해당 공사범위 내의 통로가 오염될 시에 즉시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작업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26. 작업 기간 중 분진 발생 시에는 보양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며, 발생하는 폐자재는 매일 작업 완료 시간 이전에 학교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27.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통신, 전기, 급수, 배수 등)을 훼손 시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복구하도록 하며,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28. 공사 중 발생하는 철거물, 쓰레기 및 폐자재는 학교 밖으로 반출하여 수급자의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 필증을 학교 측에 제출하도록 한다.
29. 공사 중 위험이 예지되는 곳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상대방이 뚜렷이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 등의 통제 시설(안내표지판 및 안전 횡스, 라바콘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30. 공사 중 장비운용에 따른 신호수(교통 통제요원 포함) 및 안전요원 배치 운영조건이며, 사고 발생 시에 모든 처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31. 공사 완료 전,후 시공부위 파손 등의 하자는 책임 시공 하도록 한다.(자재포함)
31. 공사 완료 시에는 준공청소 후에 학교 측의 검사를 득하도록 한다.
32. 작업 중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담당자와 협의 후 학교 측의 지시에 따른다.
33. 공사 계약기간은 착공 후 10일로 하되, 현장 작업일수는 2일로 한다.